

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제출년월일 : 2002. 3. 25

제 출 자 : 장 준 호 의원

1. 수정이유

- 관리인의 해촉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안 제4조에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추가 하기 위함

2. 주요 골자

- 시장·군수는 관리인이 유기동물을 성실히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 - 보호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보호관리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
 - 보호관리에 관한 시장·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
 - 보호동물 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관리인의 의무) 시장·군수는 관리인이 유기동물을 성실히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보호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보호관리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
2. 보호관리에 관한 시장·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
3. 보호동물 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 (해축) 시장·군수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	<p>제4조 (관리인의 의무) 시장·군수는 관리인이 <u>유기동물을 성실히 보호관리하도록 하고</u>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축할 수 있다.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